

『2026년 제조창업기업성장지원사업』

**제조 창업기업 시제품 개발 원스톱 지원사업 모집 공고**

광주 지역 제조 창업기업의 제품개발-시장진입-시장확대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사업화자금을 지원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

2026년 04월 29일  
(재)광주테크노파크원장

1

**사업개요**

□ **사업목적** : 제조 창업기업의 제품화 과정 원스톱 지원을 통한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

□ **지원대상**

-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 소재 업력 7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 (신산업 분야 10년 이내)

□ **지원규모 및 기간**

- **(지원규모)** 9개사 내외
- **(지원금액)** 기업당 최대 7,000천원 ※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
- **(지원기간)** 협약 체결일로부터 ~ 11. 30(월), 약 6개월 내외  
※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

□ **지원내용 및 방법**

- **(지원내용 ①)** 제조창업 아이템 개발 과정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, 디자인, 특허 및 인증, 초도 양산, 마케팅 등 사업화를 위한 전문기관(업) 외주용역(가공)비 지원 ※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및 재료비 지원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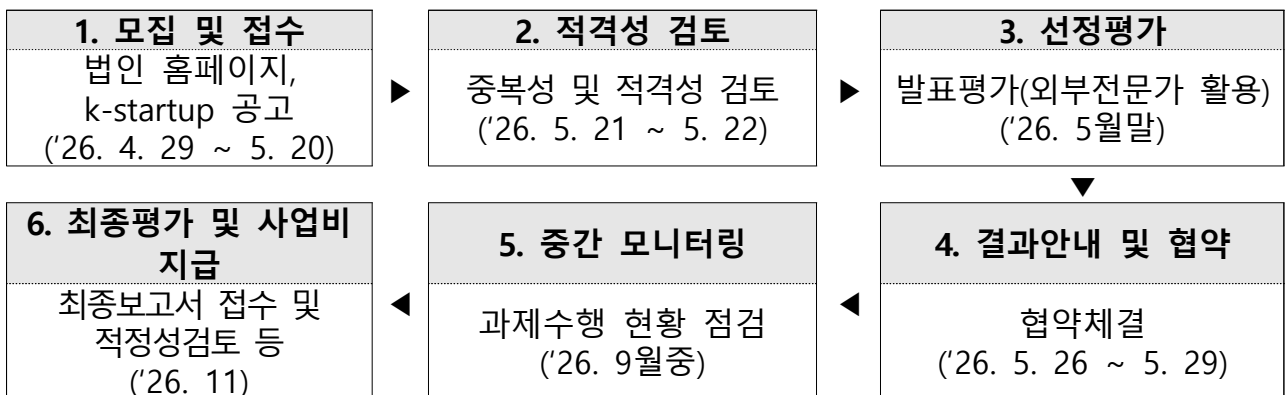
제품 개발 단계		지원 내용
① 제품 개발	시제품제작	▪ 제품 상용화 단계 시제품 개발 및 제작 지원
	제품디자인	▪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
	특허 및 인증	▪ 지식재산권 (국내외 특허출원·등록 등) 출원·등록비 ▪ 인증(시험분석, 신뢰성/성능인증, 표준화 등) 수수료 지원
② 시장 진입	초도양산	▪ 개발 제품 초도양산품 제작 지원
	마케팅	▪ 제품 홍보(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),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 지원
③ 시장 확대	제품고도화	▪ 기존 제품 보완 및 추가 고도화(기능 및 공정개선 등) 지원

- **(지원방법)** 지원프로그램 수행 완료 및 관련 제반사항 확인 후 외주 용역(가공) 기업(관)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
  - ※ 단, 공급 서비스 및 공급기관의 특성상 사업비 선납이 필요한 경우 수혜 기업이 외주용역(가공) 기업(관)에게 사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관련사항 검토 후 수혜기업에게 직접 지원비 지급 가능
- **(지원내용 ②) 시장친화형 기술보육 후속 컨설팅 지원 (1회)**

구 분	컨설팅 분야	지 원 내 용
후속 컨설팅	경영, 리더십	- 기업가정신, 사회적책임, 경영방법론(ESG, 책임경영)
	BM고도화	- 고객검증, 시장반응조사, 시장 환경분석 등 고도화 반영
	투자유치	- IR제작 및 피칭 노하우, 투자유치 전략 등
	맞춤형 컨설팅	- 기술, 마케팅, 인증, 법률 등 기타 수요 맞춤형 컨설팅

- 지원사업 선정 시 후속컨설팅 필수 참여

## □ 세부 추진일정(안)



※ 상기 일정의 경우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

## □ 사업 추진절차

단 계	세 부 내 용
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	· 사업 시행 공고 · 수혜기업 → 이메일 접수
↓	
적격성 검토	· 여건(사업 수혜여부, 사업 영위여부, 중복성 등) 검토
↓	
선정평가	· 평가위원회 개최 (외부전문가) - 발표평가 (기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)
↓	
협약 체결	· 선정기업 통보 및 협약체결(광주TP↔선정기업↔공급기업)
↓	
사업수행	·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개별 사업수행 · 기업별 중간모니터링 진행(광주TP↔선정기업)
↓	
최종보고 및 사업비 지급	· 사업비 지급 타당성 검토(최종보고서 접수) → 사업비 지급

## 2 선정절차 및 기준

### □ 선정절차 : 적격성 검토 → 선정평가 (발표평가)

#### □ 선정기준

- 제출된 신청서 기준으로 평가표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산술평균(최고, 최저 제외) 평균 70점 이상 기업
  - ※ 심사는 우리 법인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(不)
- 단, 동일 점수일 경우 '기술개발 및 사업화계획' 높은 과제 우선 선정

□ 평가배점

항 목	평 가 지 표	배 점
지원 필요성(30점)	- 기존 기술 및 제품과의 차별성/목표 구체성 등	10
	- 사전 연구 및 준비 충실도	10
	- 적용기술 및 활용/적용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	10
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화 계획(45점)	- 기술개발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20
	- 비즈니스 모델(Business Model) 전략 구체성	15
	- 사업화 가능성 및 수익성 창출 방안	10
사업비 산정 및 기대효과(20점)	- 예산운용 계획의 적정성	10
	- 성과목표 명확성 및 기대효과	10
우대가점(5점)	- Co2 저감기술(제품), 재생에너지 기술(제품) 등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관련 과제 1점	1
	- 지역 내 공급기업 연계 지원 과제	1
	- (예비창업자 부담금) 전체 사업비의 20% 이상 시	3
합계		100

3 신청방법

- 신청양식 : (재)광주테크노파크(www.gjtp.or.kr) 및 창업지원포털(www.k-startup.go.kr) 지원사업 공고 내 다운로드
- 제출서류 : 지원 신청서(기본신청서, 사업계획서) 및 하기 서류 각 1부

구 분	제 출 서 류	비 고
필 수	· 지원 신청서 각 1부	※ 첨부파일 참조
	· 사업계획서 1부	※ 지원신청서 내 포함
	· 지원신청 프로그램별 견적서 각 1부	※ 지원신청서 내 포함
	· 개인정보수집동의서	※ 지원신청서 내 포함
	· 청렴이행서약서	※ 지원신청서 내 포함
	·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
	·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	※ 법인사업자에 한함
	· 국세 납부증명서,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	
	· 재무제표 각 1부	최근 3년
	·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각 1부	
기 타	· 고용보험가입자목록 각 1부	최근 3년
	· 증빙자료 - 지식재산권, 특허출원, 창업교육 수료증 등 -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이력 및 수상 내역 등	※ 해당자에 한함

※ 필수 첨부 서류의 경우 최근 1달 이내 서류에 한함

□ **접수 및 문의처**

- **(방 법)** 이메일 접수
- **(접수기한)** 공고일로부터 ~ 5. 20(수), 17:00
- **(접수처)**

기관명	담당자	문의처	이메일
(재)광주테크노파크 (사업화허브팀)	한우재 선임	062-572-6026	pawer5@gjtp.or.kr

**4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**

□ **유의사항**

- 모집규모 대비 3배수 이상 접수 시 모집공고가 조기종료 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 개별통보)
- 기업별 최대 지원액을 감안하여 단일 지원프로그램 또는 복수 지원 프로그램 신청 가능
-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공급가액 기준 소요비용 및 기업 자부담을 산출 : 부가가치세 전액 기업 부담
- 선정평가 결과 신청지원금 축소에 따른 기업 자부담금 자동 발생 또는 증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우대가점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
- ※ 사업 신청시 소요비용 과대 산정금지
- 최종 사업결과 확인 시 기업 자부담금 전액 부담 미이행 시 해당 비율 만큼 지원금 지급비율 감액 지급
-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·관리·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
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

-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
-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(※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)
-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'실패'(또는 이에 준하는 '미흡'시) 판정 기업
-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

- 지원대상 선정 후 중도포기 또는 최종 점검결과 사업수행 '실패' 판정 시 기집행된 지원금에 대해 환수조치
-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년 함
-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 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함

## □ 지원제외 대상

- 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83호(2019. 11. 12.) '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 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' 적용 : <별표 2>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 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
- 기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

- 붙임 1. 신청서 양식(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) 1부  
 2.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1부  
 3. 청렴이행서약서(신청기업, 공급기업) 각 1부

■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[별표1] 신산업 창업 분야(제3조제1항 관련)

①	인공지능
②	빅데이터
③	5G+
④	블록체인
⑤	서비스플랫폼
⑥	실감형콘텐츠
⑦	지능형 로봇
⑧	스마트제조
⑨	시스템반도체
⑩	자율주행차
⑪	전기수소차
⑫	바이오
⑬	의료기기
⑭	기능성 식품
⑮	드론·개인이동수단
⑯	미래형 선박
⑰	재난/안전
⑱	스마트시티
⑲	스마트홈
⑳	신재생에너지
㉑	이차전지
㉒	CCUS(탄소포집·활용·저장)
㉓	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
㉔	우주
㉕	차세대 원전
㉖	양자
㉗	사이버 보안